

정 관

[사]한국플라스틱단일재질공제조합

정 관

2022. 11. 16. 제 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①본 법인의 명칭은“사단법인 한국플라스틱단일재질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라 한다.

②영문으로는“Korea Plastic Single Material Recycling Cooperative”(약칭 “KPMC”)으로 표기한다.

제2조(설립근거) 조합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사단법인으로 하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

제3조(목적) 조합은 자원재활용법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 제품의 제조·수입·판매업자(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의 회수·재활용의무대행사업과 동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발적 협약 의무이행생산자의 회수·재활용 의무를 대행함으로써 생활 및 산업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원천적 감량화 및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사회 구축 실현에 기여하고, 국가 환경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소재지 등) ①조합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조합의 활동범위는 전국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제5조(공고) 조합의 공고는 조합의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없을 때에는 중앙일간지에 게재한다.

제2장 사업

제6조(사업) ①조합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자원재활용법 제16조에 따른 회수·재활용의무대행을 위한 재활용공제사업
2. 자원재활용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발적 협약 이행 사업
3.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재활용의무 대행 및 이에 따른 분담금 징수
4. 자발적 협약이행의무생산자의 회수·재활용의무 대행 및 이에 따른 분담금 징수
5. 회원의 사업에 관한 경영·기술 및 품질관리의 지도, 조사연구, 교육 및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업
6. 플라스틱 폐기물의 재활용에 관한 국내외 정보수집 및 통계조사
7. 플라스틱 재활용 및 제품 사용촉진 확대를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 전개와 전시회 및 세미나 개최
8.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유관단체로 부터 위탁받은 사업
9. 회원사의 상호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수행
10. 기타 본 조합의 발전과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7조(공제사업 등) ①조합은 자원재활용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재활용의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재활용의무량에 따른 분담금을 납부받아 회수·재활용공제사업을 수행한다.

②조합은 제1항의 회수·재활용공제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공제사업에 대한 참여 및 분담금 납부 등을 내용으로 한 참여약정서를 제출받아 회수·재활용공제사업을 수행한다.

③조합은 자원재활용법 제16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재활용의무생산자가 납부한 분담금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한 조사방식으로 산정한 회수·재활용량에 따라 규정에 의해 산정된 금액을 그 분담금에서 공제한다.

④회수·재활용공제사업에 필요한 사항은「회수·재활용 공제사업 운영규정(이하 “공제사업 운영규정”이라고 한다)」으로 정한다.

⑤회수·재활용공제사업과 관련한 분담금 산정기준 및 납부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제8장 분담금 등에서 정한다.

⑥자원재활용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의무대행에 관한 사항은 본 조를 준용하며, 필요사항은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 운영규정(이하 “자발적 협약 운영규정”이라고 한다)」으로 정한다.

제3장 사원

- 제8조(사원의 자격)** ①조합의 사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본 정관 제14조에 따른 공제회원 및 협약이행회원, 일반회원 중 조합 발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한다.
- ②조합의 임원은 당연직 사원으로 하며, 조합의 사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사회 의결 및 총회의 승인을 요한다.
- ③사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제17조의 1에 따라 탈퇴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임된 것으로 본다.
- ④조합의 사원은 의무생산자와 재활용업체간 동수로 구성하며 50인을 초과할 수 없다.

- 제9조(사원의 권리)** ①사원은 조합의 임원 선거권, 피선거권, 총회 참석 및 의결권을 가진다.
- ②사원의 지위와 권리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 제10조(사원의 의무)** ①사원은 법령에 의한 처분, 조합의 정관 및 제 규정, 총회 및 이사회 의결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고, 조합은 사업추진 및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원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②사원은 조합의 운영과 관련하여 조합의 설립목적 또는 공익에 반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 ③사원은 제12조에 따른 신고사항이 발생하는 즉시 조합에 알려야 한다.

- 제11조(자격 상실에 따른 권리 및 의무)** 사원이 제13조에 따라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는 사원으로서의 본 조합에 대한 제9조의 권리를 상실하고 제10조에 따른 의무를 면한다.

- 제12조(신고)** ①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즉시 조합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대표자, 상호 또는 사업장(주소)을 변경하였을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폐업하였을 경우
 3. 사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4. 기타 조합의 필요에 의하여 신고를 요구한 사항
- ②제1항 각 호의 미신고로 인하여 발생한 책임은 당해 사원에게 있다.

제13조(규정의 준용) 기타 사원에 관한 사항은 제17조 내지 제18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회원

제14조(회원의 종류 및 가입자격) ①조합의 회원은 공제회원, 개별이행회원, 협약이행회원, 일반회원,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②회원의 가입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제회원은 자원재활용법 제16조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로 한다.
2. 개별이행회원은 자원재활용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분담금을 공제받기 위하여 동법 제18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의무 이행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3. 협약이행회원은 자원재활용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협약의무이행생산자로 한다.
4. 일반회원은 생활, 산업 관련 제품 회수·재활용사업자로 한다.
5. 준회원은 조합의 목적에 동의하여 참여를 원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한다.

③제2항의 각 호의 자가 조합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원가입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회원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15조(회원의 권리) ①회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조합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②회원은 사업에 관한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③회원의 지위와 권리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④조합은 회수·재활용을 위탁받은 자의 권익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당사자는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6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조합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분담금 납부(공제회원만 해당한다)

제17조(회원의 탈퇴) ①회원이 본 조합을 탈퇴하고자 할 때는 「회원관리규정」에 따라 탈퇴서를 제출하고 탈퇴할 수 있다.

②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탈퇴한 것으로 간주한다

1.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았을 경우
2. 사망 또는 실종선고를 받았을 때
3.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4. 폐업한 경우
5. 제39조에 따른 분담금 또는 가산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6. 조합과의 연락 두절 등 실제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기 힘들 때

제18조(회원의 제명) ①회원이 조합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②회원이 정관 및 제 규정을 위반하여 조합에 대해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거나 조합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 인정될 때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일반회원이 위.수탁 계약내용과 달리 허위실적으로 부당하게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위.수탁 계약을 해지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제19조(신고) ①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즉시 조합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대표자, 상호 또는 사업장(주소)을 변경하였을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폐업하였을 경우
3.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4. 기타 조합의 필요에 의하여 신고를 요구한 사항

②제1항 각 호의 미신고로 인하여 발생한 책임은 당해 회원에게 있다.

제5장 임원

제20조(임원의 구성) ①조합은 이사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의 비상근이사 와 2인이내의 비상근 감사를 두며, 상근임원으로 총괄본부장 1인을 둘 수 있다, 다만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②이사장은 비상근임원으로 한다

③조합의 임원은 등기임원과 비등기임원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임원을 선임한 때에는 제21조 3항에 따라 선임하고, 등기를 완료한 후 주무관청(환경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이사장은 필요시 자문·전문위원, 사외이사를 둘 수 있다.

제21조(임원의 선임) ①조합의 임원은 이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이사중 호선한다.

②상근임원은 이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③조합은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임원 선임과 교체시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현재 재직중인 임원의 특수관계인(친계8촌, 모계4촌이내)

제22조(임원의 해임) 조합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 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및 조합의 정관, 제 규정을 위반 하였을 때
2. 조합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3.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를 한 때
4.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23조(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 의장이 된다.

②상근임원은 상근하며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조합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조합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를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조합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⑥자문·전문위원은 이사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업무지원 및 보조를 할 수 있다.

제24조(임원의 보수 등) ①조합의 임원은 상근임원을 제외하고는 무보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외활동비, 업무추진비, 회의수당,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상근임원의 보수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③상근임원의 퇴직금은 별도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제25조(임원의 임기) ①이사 및 상근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이사장 및 상근임원은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임원의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2개월 이내에 임원을 선임해야 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임원의 임기가 정기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당해 연도 정기총회까지로 한다.

④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26조(임직원 등) ①조합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직원을 채용하며, 직원은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임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직제와 직원 수, 보수 등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7조(겸직 제한) ①조합의 상근임원과 직원(비상근 제외)은 해당 직무와 관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다만 이사장이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비영리법인에 겸직할 수 있다.

- ②조합의 모든 상근 임원과 직원(특수관계인 포함)은 조합과 계약된 재활용사업자의 운영에 관여하거나 그 사업자로부터 직·간접적인 지원 또는 보수를 받는 등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없다
- ③조합의 이사장이 비상근이며 재활용업체 대표일 경우 재활용사업자의 위수탁 물량배분 및 신규업체 진출입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수 없다.

제6장 총회

제28조(총회의 구성과 소집) ①총회는 사원으로 구성하며, 총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된다.

②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③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소집한다.

④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소집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개최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 의결이 있을 때
3. 사원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과 소집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청구할 때
4.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⑤이사장은 총회의 소집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사원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29조(총회 의결사항) ①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단, 상근임원은 제외)
3. 사원 선출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승인에 관한 사항
5. 사업보고 및 수지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6. 조합 해산에 관한 사항
7. 기타 사업목적 및 중요하다고 인정되어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

②제1항 각 호 사항 중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변경은 총회의 의결로서 이사회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30조(총회 의결) ①총회의 의결은 재적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사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 개정 및 해산 결의는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사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서 의결한 후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②총회의 의결권과 선거권은 사원이 행사한다. 다만,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사원은 대리인의 출석 또는 서면의견 제출로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으며, 대리인 출석의 경우 그 권한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총회 참여제한) ①의장 또는 사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본인에 관한 사항
2. 재산 및 금전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본인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②의장이 제1항에 따라 의결을 참여할수 없는 경우, 임시의장을 호선한다

제32조(총회 의사록) 총회의 의사록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의장과 출석 이사가 기명 날인하여 보존한다.

1. 개최일자 및 장소
2. 출석자의 수
3. 의사경과와 결과

제7장 이사회

제33조(이사회 구성) 조합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34조(이사회 소집)①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사장이 이사장이 의장이 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 과반수의 동의로써 회의의 목적과 소집사유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요청한 때
3.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이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5조(이사회 의결사항) ①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상근임원의 선출, 해임 및 연임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칠 안건에 관한 사항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제 규정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10. 사원의 선임 및 권리 정지에 관한 사항
11. 기타 협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이사회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41조의 위원회에 의결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 그 경우 위원회의 의결은 이사회 의결로 간주한다.

제36조(이사회 의결) ①이사회 의결은 의결권이 있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②이사회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③의안이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참여제한) 이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본인에 관한 사항
2. 재산 및 금전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본인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38조(이사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의장과 출석 이사가 기명날인하여 보존한다.

1. 개최일자 및 장소
2. 출석자의 수
3. 의사경과와 결과

제8장 분담금 등

제39조(분담금 등) ①조합은 자원재활용법 제16조의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동법 제12조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협약의무이행생산자의 재활용의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분담금을 징수한다.

②재활용의무생산자 및 협약의무이행생산자별 분담금은 제42조에 따른 공제사업운영위원회가 결정한 분담금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③분담금과 관련된 회계는 제품별로 관리하며, 세부사항은 「공제사업운영규정」 및 「자발적 협약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④조합은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협약의무이행생산자가 제2항에 따라 산정된 분담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⑤분담금의 납부절차 및 가산금 요율 등 가산금 징수에 관해서는 「공제사업 운영규정」 및 「자발적 협약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⑥조합이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를 미이행하여 재활용부과금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제품별 공제회원의 재활용의무량 점유율로 배분하여 별도 청구한다. 단, 협약의무이행생산자의 미이행부과금은 자발적 협약 운영지침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한다.

제40조(분담금의 양도·양수) 분담금은 양도·양수하거나 공제회원 및 협약이행회원의 채무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41조(재활용부과금 등의 승계) ①조합이 해산 또는 파산하여 재활용의무량을 미달한 때에는 해당 공제회원이 재활용부과금을 납부할 책임을 진다.

②제1항의 재활용부과금은 공제회원의 재활용의무량 점유율로 배분하여 산정한다.

③미이행부과금에 관하여도 제1항내지 제2항을 준용한다.

제42조(공제사업운영위원회 구성·운영) ①조합은 회수·재활용공제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생활, 산업 관련 제품 순환자원의 유통체계 구축 등 회수·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공제사업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제1항의 공제사업운영위원회는 분담금의 단가 결정에 관한 사항, 회수·재활용 지원금의 단가 결정, 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 기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정 또는 협의할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공제사업운영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반하는 사항을 의결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단, 분담금의 단가 결정과 회수·재활용 지원금의 단가 결정에 관한 공제사업운영위원회의 결정은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로 간주한다.

③공제사업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필요시 증감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④조합은 공제사업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품목별로 구성할 수 있다.

⑤제4항의 실무위원회는 분담금 및 지원금, 운영비 등에 대해 외부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제사업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⑥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공제사업운영위원회가 내린 결정 또는 운영이 법령 또는 공익에 반하는 경우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조합 및 공제사업운영위원회는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

제43조(고문 등) ①조합은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고문, 자문위원 및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고문 및 자문위원이 조합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수행 시 별도 규정에 따라 소요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장 재산 및 회계

제44조(수입) 조합의 운영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각종 분담금
2. 기부금 또는 보조금
3. 자산에서 생기는 수입
4. 사업에 수반된 수입
5. 기타 수익금

제45조(수익사업) ①조합은 제6조에서 정하는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각종 수익사업을 영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수익사업은 그 사업의 종류별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③수익사업 운영으로 취득한 수익은 어떠한 형식으로도 구성원에게 분배될 수 없다.

제46조(재산의 구분과 관리) ①조합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1.기본재산의 목록과 평가액은 [별지 1]과 같다.

2.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②조합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 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일정금액 이상을 장기차입하려면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7조(회계운용) ①조합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여 편성·운용하며,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48조(회계원칙) 조합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49조(회계연도) 조합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50조(수지차액의 처분) 조합은 수지결산차액이 생길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립하거나 다음 해에 이월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51조(사업계획 등) ①조합은 사업계획, 예산, 사업실적 및 결산서류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 의결 후 총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

②조합은 사업계획, 예산, 사업실적 및 결산서류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작성하여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장 해산

제52조(해산) ①조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한다.

1. 총회에서의 해산 결의
2. 파산
3. 기타 해산사유 발생

②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해산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3조(청산인) 조합의 해산 시에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임원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제54조(잔여자산의 처분) 조합 해산 시 조합의 채무를 변제하고도 잔여자산이 있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11장 보칙

제55조(표창)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조합의 발전에 공이 현저한 자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56조(운영규정) 이 정관에서 규정한 것 외, 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57조(경미한 사항)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법령 개정 등 상위 규정 개정 등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사항
2. 각종 규정 개정에 따른 필요한 양식의 제·개정
3. 각종 규정 중 내용의 변경이 없는 문구의 수정
4. 각종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일반적으로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8조(준용) 본 정관이나 제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1]

기본재산의 목록 및 평가액

순번	명칭	종류	평가액
1	기본재산	현금	30,000,000